

|        |             |
|--------|-------------|
| 의안번호   | 2125748     |
| 의 퇴 인  | 정경희 의원      |
| 회 답 일  | 2023.12.21. |
| 추 계 번호 | 23B4767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br>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 의무규정 |
| 2  |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등의 정보(이하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제2항)                                                                                                  | 의무규정 |
|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13조의2에 따른 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봄(제3항)                                                                                                                                                                                             | 의무규정 |
| 3  | 안 제13조의2(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제1항)<br>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br>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재량규정 |
|    |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2항)                                                                                                                                                                         | 의무규정 |
|    |                                     |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가사근로자에 대한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제3항)                                                                                                                                                                                                    | 재량규정 |
| 4  | 안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항)<br>3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재량규정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조(정의)                      | ×    | (미첨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 2  | 안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 —    | (미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3  | 안 제13조의2(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 ×    | (미첨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 4  | 안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 —    | (미대상)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2. 상세 사유

□ (안 제2조)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 유급 고용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임
  -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고용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 인증기관) 및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sup>1)</sup>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80%)를 지원하고<sup>2)</sup>, 가사서비스 전산 시스템 및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

1) (모두 충족) ①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②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③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 3년 한시사업(2022~2024년): 2024년까지 신청한 자에 대해 3년이 되는 때까지 지원(최대 '27년까지)

[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  |       |          |     | 2023<br>예산액 | 2024<br>예산안 |
|------------------|-------|-------|----------|-----|-------------|-------------|
|                  | 예산액   |       | 예산<br>현액 | 집행액 |             |             |
|                  | 본예산   | 수정    |          |     |             |             |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1,675 | 1,675 | 1,675    | 17  | 5,814       | 608         |
| ·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운영 | 129   | 129   | 129      | 102 | 1,422       | 75          |
| ·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 293   | 293   | 293      | 201 | 353         | 590         |
| 합계               | 2,097 | 2,097 | 2,097    | 320 | 7,589       | 1,273       |

주: 1. 2024년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일반회계)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2. 2022년 신규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므로, 기존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확대 규모를 확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안 제13조의2)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조항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속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그러나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행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회하여 결격사유 해당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sup>

3)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남 희 | 이현경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남 희 | 02-6788-3737 | nhee@nabo.go.kr |

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